

의안처리상황표

의안번호	588		
건명	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발의자	성북구청장		
발의연월일	2026년 4월 3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26년 4월 28일	제31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청취완료	
이송연월일	2026년 4월 30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장애인들에 대한 상담·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성북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2026.6.30.)에 따라 성북장애인복지관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승인 및 동의)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

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성 북 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안 번호	588
----------	-----

제출년월 : 2026년 4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장애인들에 대한 상담·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성북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2026.6.30.)에 따라 성북장애인복지관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라 성북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정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승인 및 동의)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개관일	비고(現 위탁기관)
성북장애인 복지관	성북구 화랑로 130 (하월곡동)	대지 856㎡ 건물 2,475㎡ (지하1층, 지상5층)	2007.07.01.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위탁기간 2021.7.1.~2026.6.30.)

나. 위탁기간 : 2026. 7. 1. ~ 2031. 6. 30. (위탁 협약일로부터 5년)

다. 위탁방법 : 종합성과평가 적정에 따른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재계약 적격성 심의·의결

라.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 성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에 따른 사무 전반
-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설관리 및 필요시 공간구성
- 운영사업의 행정·회계업무 처리, 운영관리와 성과·평가관리
- 사업운영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관리
- 그 밖의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승인 및 동의)

-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치사무의 경우 재위탁을 포함한다.
- ②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라운영의 위탁)

-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보 또는 인터넷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위탁하는 시설의 위치 및 명칭
 2.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3. 위탁기간
 4.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등
-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 2에 따라야 하며, 시설의 위탁기간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